

보도시점 : 2024. 3. 27.(수) 11:00 이후 (3. 28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3. 27.(수)

포항,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

- 거제, 당진, 춘천에 이어 ‘포항’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
- 29일,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·지자체 대상 간담회 실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 혁신파크*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거제, 당진,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하였다.

* 기업이 입지 선정, 개발계획 수립, 투자, 개발,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,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

○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, 금번 발표한 포항까지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.

□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, 한동대학교, (주)에코프로, (주)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하였다.

○ 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여, 선도사업 참여 기업들의 공간 확장 및 인재 수급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제안서에 반영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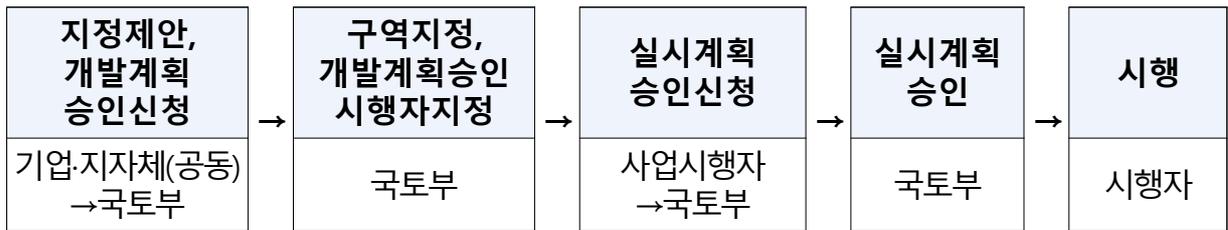
○ 또한, 한동대학교와 기업들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, 지역 혁신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□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점검하고, 4월부터 컨설팅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.

- 올해 안으로 기업과 지자체의 선도사업 개발계획(안)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,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*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.

* 도시계획/개발, 산업/일자리, 기업유치/사업성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

< 기업혁신파크 주요 개발 절차 >



*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·승인도 가능

**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

-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“기업이 나서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만큼,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”이라면서,
- “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수 (044-201-3684)
		담당자	사무관	송혜연 (044-201-3689)
		담당자	주무관	조승현 (044-201-3698)



참고1

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

□ 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

- (위치/면적)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/ 54.7만m²(16.5만평)
- (예상 기간/사업비) 2024년 ~ 2030년 / 2,565억 원 (잠정)
- (참여기업) 한동대학교, (주)에코프로, (주)포스코퓨처엠, (주)한동순,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한국협의회, 삼성증권(주), (주)대우건설
- (사업비전) 대학·산단 인접 지역에 산학연 글로벌 혁신생태계 활용, 기업유치·창업 지원하는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 육성공간 조성

□ 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



※ 포항 기업혁신파크 공모 제안서, 포항 기업혁신파크 참여기업 제공

□ **추진 배경**

- 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·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·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
 - 기업과 지자체,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*하고, 기업·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 선정·추진
- *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(100→50만㎡) 등 「기업도시법」 개정('24.8.14.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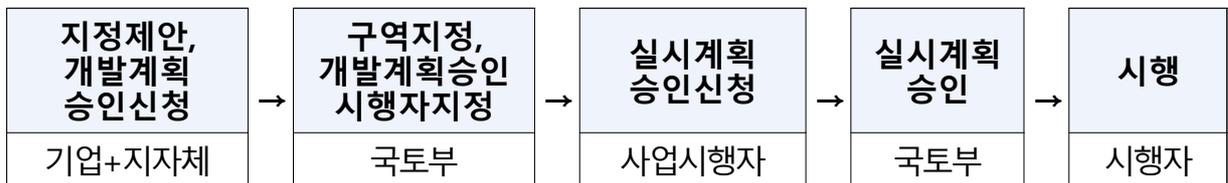
□ **사업 개요**

- (개념) 민간 주도로 계획수립·투자·개발 및 직접 사용하는 도시
 - * (기업도시법 제2조)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, 민간기업이 산업·연구·관광·레저·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·교육·의료·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
- (인센티브)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

대상	내용
사업시행자	▲ 개발면적 50%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, ▲ 주진입도로 설치비 50%지원, ▲ 법인세감면(3년 50%, 2년 25%), ▲ 도시혁신구역 도입 등
입주기업	▲ 신설·창업기업 법인세감면(3년 100%, 2년 50%) ▲ 국·공유지 임대료 20%감면

- (시행요건) 균형발전, 공공성, 민간 역량 및 개발 필요성 등 고려
 - ① **입지·개발면적:** ▲ (입지제한) 비수도권 대상, ▲ (최소개발면적) 50만㎡이상
 - ② **토지이용관련:** ▲ (주된용도) 개발가능 토지의 30% 이상을 산업·연구 등 주된용도로 사용
▲ (직접사용) 주된용도의 20%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
 - ③ **사업시행자요건:** ▲ (재무요건) 매출액(2,500억 이상) 또는 신용등급(BBB이상) 등
▲ (자기자본)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%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

○ (개발절차)



*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·승인도 가능
 **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